



열린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



2017년 다산기념관 부분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7. 11. 28.[화]~11. 30.[목] / 3일간
- 대상기간 : 2015. 11. 1.~2017. 10. 31. / 2년간
- 지적사항 : 10건
 - 시정 2건, 주의 8건
 - 재정상 조치금액 : 없음



강진군
【기획홍보실】

2017년 다산기념관 부분감사 결과

I 종 평

- 다산 선생의 목민정신이 살아 숨 쉬는 청렴 사적지인 강진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 덕목인 청렴, 애민, 개혁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산 청렴·푸소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가치 함양에 기여
- 다산 청렴·푸소체험 교육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년간 21,347명의 교육생이 다녀가 2,600백만 원의 교육비를 징수하여 군 세외세입 증대에 기여
- 또한 주변 관광지, 숙박업소, 농박, 농촌 체험, 음식 업소(강진 음식문화 체험)와 연계 운영하여 지역민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
- 다만, 회계지출서류 편철시 목록과 함께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 연2회 이상 소장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장에게 최종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II 감사 결과

1. 처분요구 실적 : 10건

- 시정 2건, 주의 8건
- 재정상 조치금액 : 해당없음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원)

연번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기타
			시정	주의	계	회수	
계		10건	2	8			
1	회계분야 예산의 지출결의서 적용 부적정		O				
2	" 업무추진비 지출업무 소홀		O				
3	" 회계지출서류 편철 소홀		O				
4	" 연말 세출예산 집행처리 부적정		O				
5	" 각종 교육 추진시 강사계약서 작성 소홀		O				
6	일반행정 소장유물 전수조사 결과보고 소홀		O				
7	공사분야 공사계약 체결업무 소홀		O				
8	" 공사 계약시 청렴서약서 제출 미 이행		O				
9	" 공사 관리대장 기록·관리 소홀		O				
10	" 각종 공사 하자검사 처리업무 소홀		O				

III 지적사항 요약

1. 예산의 지출결의서 적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3항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 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 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5년 10월부터 "다산 공직관 청렴 교육과정 및 푸소체험 강진음식문화 체험비 식대" 등 총5건을 지출하면서 「강진군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별지 제45호 일반지출결의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물품구입시에는 별지 제48호서식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적용하여 예산을 지출함.

2. 업무추진비 지출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17.2.23.)시행 '신용 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업무추진비 2건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500천 원을 초과하여 지출함.

3. 회계지출서류 편철 소홀

-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제126조 제2항의 의하면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제 제91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129조 제3항에 따르면 회계 서류를 편철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4. 연말 세출예산 집행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82호 2017.2.23.시행)』 지침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12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총 3건에 1,996천 원을 연말에 몰아서 지출함.

5. 각종 교육 추진시 강사계약서 작성 소홀

-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강의시간, 금액, 강사 수당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간 1부를 보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여 사회 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사수당 지급 시에는 최초 계약 하였던 계약서를 첨부하여 강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소장유물 전수조사 결과보고 소홀

- 『강진군 다산기념관 운영 조례』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유물출납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유물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6년과 2017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또한,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출납공무원이 승인해야만 출입 할 수 있으며, 유물출납 공무원이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2015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회에 거쳐 유물출납공무원이 단독으로 출입하는 등 수장고 관리를 소홀히 함.

7. 공사계약 체결업무 소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1항에 의하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¹⁾,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수의계약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공사량의 증·감 발생 시 위의 서류를 근거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기념관 입구 비가림 시설 철재 외1개소 도장보수공사”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만 첨부하는 등 지연배상금도 0.5/1,000을 적용하여야 하나, 법 개정 전 1/1,000을 적용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함.

8. 공사 계약시 청렴서약서 제출 미 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의2항, 시행령 제5조의 2항에 의거 각종 공사계약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 대상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관계로 계약하였던 총2건에 대해 청렴서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함.

9. 공사 관리대장 기록·관리 소홀

-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 관리대장을 동 규칙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거나, 또는 “강진군 계약관리 프로그램”으로 전산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나,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시행한 공사 3건에 대해 공사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1) 설계서란 :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한다.

10. 각종 공사 하자검사 처리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규정에 의거 정기 검사는 연 2회 이상, 최종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실시하고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6년 시행한 공사 2건에 대하여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